|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  **수출화물 퇴(면)세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3호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수출서비스의 우세를 더 한층 발휘하고 중소기업이 국제시장의 유효한 개척을 지지하기 위하여 재정부, 상무부의 협상, 동의를 거쳐 수출화물에 관한 퇴(면)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은 스스로 경영하는 방식으로 국내생산기업과 경외단위 또는 개인과 체결한 수출화물을 수출함에 있어서 아래의 상황을 동시에 구비하였을 경우 대외무역기업이 스스로 경영하여 수출하는 규정에 따라 퇴(면)세를 신고한다.  (1) 수출화물이 생산기업 스스로 생산한 화물인 경우;  (2) 생산기업이 이미 수출화물을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3) 생산기업과 경외단위 또는 개인이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화물이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경외단위 또는 개인에게 수출하기로 약정되었고, 상품대금이 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4)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스스로 경영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술한 수출화물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대외무역수출 경영질서 진일보 규범 및 수출화물 퇴(면)세관리 실제적 강화에 관한 통지>(국세발[2006]24호)제2조 제(3)항규정,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노무증치세와 소비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39호)제7조 제(1)항 제7목의 (3)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본 공고 제1조에서 규정한 수출화물 퇴(면)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대외무역기업 수출퇴세 수입화물명세 신고표> 제15란(업무유형), <대외무역기업 수출퇴세 수출명세 신고표> 제19란 [퇴(면)세 업무유형]에 ‘WMZHFW’을 기입하여야 한다.  3.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은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생산기업의 경영상황과 생산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며 신고한 수출 퇴(면)세화물의 국내 구입 및 수출 진실성에 대한 신고를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허위적으로 발행한 증치세 과세증빙(허위적으로 발행한 증치세 과세증빙의 수락을 포함하지만 선의취득인 경우는 제외함), 수출환급세 편취 등 세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책임주체로 하여금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4. 주관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의 퇴(면)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에 대한 감독통제예비경보, 감사, 평가분석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출환급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되였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본 공고에서의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란 국내 중소형 생산기업의 수출을 위하여 물류, 세관신고, 신용보험, 융자, 외환회수, 퇴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외무역기업을 지칭한다.  6. 본 공고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 본 공고 제1조 범위 외의 화물을 수출할 때에는 계속 현행 퇴(면)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2월 27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外贸综合服务企业出口**  **货物退(免)税**  **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13号  为进一步发挥外贸综合服务企业提供出口服务的优势，支持中小企业更加有效地开拓国际市场，经商财政部、商务部同意，现将有关出口货物的退（免）税事项公告如下：  　　一、外贸综合服务企业以自营方式出口国内生产企业与境外单位或个人签约的出口货物，同时具备以下情形的，可由外贸综合服务企业按自营出口的规定申报退（免）税：  　　（一）出口货物为生产企业自产货物；  　　（二）生产企业已将出口货物销售给外贸综合服务企业；  　　（三）生产企业与境外单位或个人已经签订出口合同，并约定货物由外贸综合服务企业出口至境外单位或个人，货款由境外单位或个人支付给外贸综合服务企业；  　　（四）外贸综合服务企业以自营方式出口。  上述出口货物不适用《国家税务总局 商务部关于进一步规范外贸出口经营秩序切实加强出口货物退（免）税管理的通知》（国税发〔2006〕24号）第二条第（三）项规定、《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政策的通知》（财税〔2012〕39号）第七条第（一）项第7目之（3）的规定。  二、外贸综合服务企业申报本公告第一条规定的出口货物退（免）税时，应在《外贸企业出口退税进货明细申报表》第15栏（业务类型）、《外贸企业出口退税出口明细申报表》第19栏〔退（免）税业务类型〕填写“WMZHFW”。  　　三、外贸综合服务企业应加强风险控制，严格审查生产企业的经营情况和生产能力，确保申报出口退（免）税货物的国内采购及出口的真实性。外贸综合服务企业如发生虚开增值税扣税凭证（包括接受虚开增值税扣税凭证，善意取得的除外）、骗取出口退税等涉税违法行为的，应作为责任主体按规定接受处理。  　　四、主管税务机关应按规定受理外贸综合服务企业的出口退（免）税申报，并加强对外贸综合服务企业的预警监控、审核、评估分析，如发现涉嫌骗取出口退税疑点的，应按现行规定进行处理。  　　五、本公告的外贸综合服务企业是指：为国内中小型生产企业出口提供物流、报关、信保、融资、收汇、退税等服务的外贸企业。  六、本公告自2014年4月1日起施行。外贸综合服务企业出口本公告第一条范围外的货物，继续按现行退（免）税规定执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4年2月27日 |